

새로운 뉴스 생산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박선희 & 주정민, 2004). 반면, 기존 언론과는 다른 독특한 뉴스 생산 및 뉴스 수용방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독립형 인터넷과 토론/패러디 유형의 인터넷 언론을 인터넷 대안언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박선희 & 주정민, 2004).

특히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과 같은 독립형 인터넷 언론은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는 등 다원적 정보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황용석, 2003) 대표적인 인터넷 언론으로 평가할 만하다.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는 국내외 수 만명의 시민 기자들을 회원으로 확보해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함은 물론 댓글 달기 등과 같은 이용자 피드백 기능 등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주류에서 멀어져 있던 개인이나 계층의 표현의 자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저널리즘의 지평을 여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독립형 인터넷 언론은 유·무형의 기득권 세력에 의한 압박이나 출입처제도와 같은 기존 언론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물론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기반 언론의 등장은 또한 이에 대한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누리고 있는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담당토록 할 수 있는 법규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3. 인터넷과 언론 중재법

1) 2005년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

지난 2005년 7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이 법률들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비판신문의 정부 감시기능을 봉쇄하기 위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난과 함께, ‘언론피해로부터 일반인을 구제하기보다 언론자유에 피해를 줄 우려가 훨씬 더 크다’는 이유로 위헌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박선희, 2008). 하지만 이 법률들은 인터넷 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피해구제의 길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과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했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즉, 인터넷 언론은 또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각 조항 별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는 병기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통 매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은 물론 의무를 부여했다. 새로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있어서도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명문화했다. 인터넷언론사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간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인터넷 언론의 선거 관련 토론회나 광고도 허용의 길이 열렸다. 또 인터넷신문이 등록 대상이 됨에 따라 당국과 업계는 공식적인 인터넷 언론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신문법은 다른 정기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 등록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했다. 즉,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해당되는 언론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행소의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주된 보급 대상 및 보급지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신문법은 부칙(제3조)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뒤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한마디로 2005년 시행된 신문법은 인터넷 언론으로 하여금 전통 매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의무와 책무 등 강제사항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신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중재 대상에 인터넷 신문을 포함시키게 됐다. 다시 말해 지난 2005년 7월 28일 이후 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인터넷 신문에 한정되긴 했지만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도 기존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반론권 행사 등 언론중재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중재법 시행이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신청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언론중재법의 도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구제 요구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당시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동적인 소 제기 △언론중재위 통한 손해배상 신청

가능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 가능 등의 조항이 규정됐다.

<표>인터넷 신문 조정 및 중재신청 현황(2005년 이후)

기 간	조정신청	중재신청
2009년 1~3월 현재	25	6
2008년 1~12월	157	3
2007년 1~12월	113	0
2006년 1~12월	77	0
2005년 1~12월	48	0

출처: www.pac.or.kr

특히 2005년 당시 중재법이 인터넷 신문을 포함시킨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언론 중재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언론매체에 의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현상을 법정 밖(out of court)에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7년 명예훼손법 개정안(Uniform Defamation Act)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ement)의 도입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표성수, 1997; 이재진 2006에서 재인용). 일본의 경우는 비록 법정에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사죄광고가 특별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이재진, 2006).

2) 2009년의 개정 언론중재법

하지만 지난 2005년 시행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반론권 등 이용자 측의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중재법이 내포하고 있던 언론 자유의 침해 요소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함은 물론,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포털, 언론사닷컴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필요했다.

이 같은 기존 법제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속에서 국회는 2009년 1월 13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수년간 진행돼왔던 신문법 및 중재법과 관련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이 있었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헌재 2006.6.29.2005헌마165)

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 확인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요구와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포털,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 대해 청구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즉, 개정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포털 등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추가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 간 보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삭제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기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 닷컴 등에 의한 수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요구를 감안해 해당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을 언론중재법이라는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닷컴 사이트 게재물에 대해서도 언론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는 새로운 매체가 진화를 거듭함에 따라 언론관련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업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기존 매체 이용자를 능가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함은 물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따른 인격권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언론중재의 적용대상에 해당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행위를 추가한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정 언론중재법은 적용매체의 확대뿐만 아니라 위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중재결정의 취소, △정정보도청구의 소, △시정권고 등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정남철, 2009).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2조 제3항). 이는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조정결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조정·중재 과정에 있어 편의성이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관련해 눈여겨볼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중재결정의 취소-개정 중재법은 또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및 중재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결정취소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 이었거나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더 넓히고 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또한 정정보도 청구의 소와 관련해서, 개정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언론자유 위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 상의 정정보도 청구를 가치분절차에 따라 간이 소명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토록 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언론으로서는 반론보도나 추후보도 청구에 비해 정정보도 청구가 갖는 의미의 비중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중재법이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했다는 점은 특히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만하다.

△시정권고-시정권고와 관련, 개정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의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2항을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위해 삭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제도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편으로 피해 구제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언론자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정권고제도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4. 포털 뉴스 법제화의 이슈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의 뉴스 소비가 포털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가 시중 서점과 같은 단순 매개